

#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자료제공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 I. 벌칙 개요

### [1] 벌칙의 종류

#### 1. 행정벌

1) 의의 :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관계법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므로써 법규의 실효성 확보

#### 2) 종류

(1) 행정형벌 : 징역·벌금—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함

(2) 과태료 : 행정법상의 의무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제재(금전벌의 일종)—행정기관이 부과 징수하며 이의제기시 비송사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절차에 의함

\* 과태료는 면허수가 아닌 법인·자연인 기준으로 위반행위별 회수에 따라 부과

#### 2. 행정제재

##### 1) 면허취소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건설산업기본법상)

##### 2) 영업정지

도급계약의 체결은 물론 입찰·견적 등 도급계약의 부수적 행위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건설산업기본법상)

#### 3) 과징금

경제법상 의무위반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하는 행정 제재금

#### 4) 자격취소

#### 5) 자격정지

\* 행정벌과 행정제재는 동시에 처벌이 가능함

### [2] 처벌절차

1. 징역과 벌금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되고 과태료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함

2. 면허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는 시·도지사가 청문 등의 절차를 밟아 처분함

## II.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도표참조]

###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기준(건설교통부 지침. '98. 2. 1.)

#### 1.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재처분 전결권자의 상위자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정지 처분

①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입증된 때

②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재처분하는 때

– 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

–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④ 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10인 이상의 사망사고인 때

(2)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2)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건설업의 면허기준 미달)로서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2)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일괄하도급제한 위반)로서 최근 6월이내 법 제29조 위반으로 제재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때

(3)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9호에 해당되는 사유(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로서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시공중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소속근로자의 실직과 거래업체의 연쇄도산 등으로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4)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되는 때

## 2.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한 결정기준

### 1)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영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 별표 6에서 정한 기준 중 그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경감사유

##### ① 처분회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 ② 위반동기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 ③ 위반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가로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절차를 허위로 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④ 위반건수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다른 위반행위(과태료부과사유 제외)와 병합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인 때

#### (2) 가중사유

##### ① 처분회수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 ②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때

##### ③ 위반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 한다)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 이상의 물적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 ④ 위반건수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다른 위반행위(과태료부과사유 제외)와 병합되거나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3건 이상인 때

### 3. 과태료의 결정기준

영 제89조(과태료의 부과 등)제3항 별표 7에서 정한 금액중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경감 및 가중사유

영업정지 기간 결정기준의 경감 및 가중사유와 같다.

#### 2) 경감 및 가중의 비율

경감 및 가중사유마다 별표 6에 정한 과징금의 1/8씩 경감 또는 가중한다.

#### 3) 과징금의 산정

(1) 영 별표 6-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정액제)은 위 2) 경감 또는 가중의 율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한다.

(2) 영 별표 6-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포함)의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률은 직선보

간법(直線補間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로 하고 당해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을 떼어 버린다.

### 4. 기타

1)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86조(청문)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회 또는 청문출석을 통지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기하여 줄 수 있다.

3) 위반 건설업자에 대한 의견진술(청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4)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중인 경우에는 사실심이 완료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다.

5)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서 조합시공 또는 불량자재 사용 등으로 통보되었으나 조사결과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미한 사안으로서 이미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부실벌점 또는 경고조치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위반사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b>▣ 무등록시공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li> </ul>	법제9조항제1항 법제96조 법제8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li> <li>• 등록말소</li> </ul>
<b>▣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b>	법제10조 법제8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말소 또는 1년이하의 영업정지</li> </ul>
<b>▣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b>	법제16조 법제82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 30/1000이하의 과징금</li> </ul>
<b>▣ 건설업등록 등의 대여금지 위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li> </ul>	법제21조 법제83조 법제9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말소</li> <li>•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li> </ul>
<b>▣ 도급계약의 성실이행의무 위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ul>	법제22조제1항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명령</li> <li>•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시정명령 불이행시)</li> </ul>
<b>▣ 원·하도급 서면 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위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하도급 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li> </ul>	법제22조제2항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명령</li> <li>•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시정명령 불이행시)</li> </ul>
<b>▣ 건설공사대장 비치 의무 위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li> </ul>	법제22조제3항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명령</li> <li>•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시정명령 불이행시)</li> </ul>
<b>▣ 시공능력공시를 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자</b>	법제23조제3항 법제97조	500만원이하의 벌금
<b>▣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불이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 불이행</li> </ul>	법제28조제1항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명령</li> <li>•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시정명령 불이행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li> </ul>	법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li> </ul>

위반사항	근거 조항	처벌 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이상 포함된 경우	법제82조제1항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제93조제1항	• 10년이하 징역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제93조제2항	•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법제94조제1항	•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제94조제2항	•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법제29조제1항 법제82조제2항 법제96조	•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문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제29조제2항 법제82조제2항	•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건설 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제29조제3항 법제82조제2항	•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중 전문공사를 전문건설 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하도급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	법제29조제4항 법제82조제2항	〃
▣ 하도급계약 통지위반		
◎ 전문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통지를 않은 경우	법제29조제4항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법제82조제1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시정명령불응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
◎ 전문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통지를 허위로 한 경우		
▣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위반		
◎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15일이 내에 현금으로 지급치 않은 경우	법제34조 법제81조 법제82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시정명령불응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반사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지급치 않은 경우		
▣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 하도급계약 체결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등에 따른 공사 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동일한 시유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 지급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법제36조 법제81조 법제8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명령</li> <li>•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시정명령불이행시)</li> </ul>
▣ 검사 및 인도 의무 불이행 ◎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 10일 이내 검사를 하여야 하고 설계내용대로 준공될 때에는 즉 시 이를 인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법제37조 법제81조 법제82조	"
▣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제38조 법제81조 법제82조	"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 건설공사 현장에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제40조제1항 법제9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만원이하의 벌금</li> </ul>
▣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는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제47조제2항 법제82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 30/100이하의 과징금</li> </ul>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 등의 태만행위 ◎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49조제1항 법제81조 법제8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명령</li> <li>•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시정명령불이행시)</li> </ul>
◎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허위를 한 경우	법제8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li> </ul>
▣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경우	법제8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6월</li> </ul>
▣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6월</li> </ul>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li> </ul>

위반사항	근거 조항	처벌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li> </ul>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li> </ul>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li> </ul>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법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li> </ul>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li> </ul>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명이상 사망한 때</li> <li>◎ 6명이상 9명이하 사망한 때</li> <li>◎ 3명이상 5명이하 사망한 때</li> </ul>	법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li> <li>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li> <li>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li> </ul>
▣ 양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 <li>◎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li> </ul>	법제98조	